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5.5.28.(수) 조간	배포	2025.5.27.(화)
담당부서	회계감리2국 기획감리팀	책임자	팀 장 박기현 (02-3145-7292)
		담당자	수 석 김유나 (02-3145-7293)
	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	책임자	팀 장 손기숙 (02-3145-7702)
		담당자	수 석 시종근 (02-3145-7706)

**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,
주요 지적 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.**
- 최근 3년간 회계심사·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-

< 주 요 내 용 >

◆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('22~'24년)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·감리를 실시하였고,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되었습니다.(중조치는 증선위·금융위 의결)

-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(22사), 재무적 위험 기업(31사) 및 사회적 물의 기업(12사) 등에 심사·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,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하였으며,
- 그 결과,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*되었고, 22사가 검찰고발·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.

* 과징금 부과액: '19년~'21년 356억원(연평균 119억원) → '22년~'24년 772억원(연평균 257억원)

◆ 한편,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·감리 지적사례를 연2회 공개하고 있으며,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건을 공개*하였습니다.

* '22년도 이후 공개를 확대('22년15건→'23년18건→'24년27건)하고, '11년 이후 총 182건 공개

-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IPO 예정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,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, 회계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I 심사·감리 실적

- **(개요)**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('22년~'24년)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·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**중대한 위반사항**에 대해 신속하고 **엄정**하게 대응하였습니다.

- 3년간 458사에 대한 심사·감리 결과,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에 따라 **52사**에 대한 **과징금**을 부과하고, **22사**를 **검찰고발**하는 등 총 214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.

연도별 심사·감리 현황

(단위: 사, 억 원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'22~'24년	'19~'21년
심사·감리 합계	160	133	165	458	431
심사*	136	113	130	379	273
감리**	24	20	35	79	158
중조치					
과징금(건수)	17	15	20	52	63
과징금(금액)	260	91	421	772	356
검찰고발·통보	6	7	9	22	26

* (심사) 공시자료 검토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 소명을 듣고, 경미한 위반(과실)이 있는 경우 수정권고하여 회사가 수용하면 **경조치(금감원장) 종결**

** (감리) 수정권고 불수용, 중조치, 제보 등 혐의사항은 감사인까지 위반 여부 검토

- **(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)**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**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인**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,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**자본시장 진입 차단**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(22사) 중 증선위로부터 **중조치**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**상장 유예**되었고, 그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**신속히 거래정지**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- **(재무적 위험·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)** 한계기업 등 **재무적 위험기업**(31개사)과 **사회적**으로 **물의를 일으킨**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(12개사)*을 심사·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,
 - *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, 횡령·배임 발생기업, 무자본 M&A 기업 등
- 심사·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**조치**(지적률 47.2%)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7건은 **중조치**(중조치 비율 41.2%)되는 등 **부정적발 기능**이 **강화**되었습니다.

II 심사·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

- 금융감독원은 '11년 이후 심사·감리 지적사례들을 **공개**해 왔으며, '24년부터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**연 2회**로 단축하였습니다.
- 이번에 공개하는 '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하여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.
- '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**매출·매출원가 허위계상** (4사)이었으며, 주식 미기재 2사,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,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·부채 관련 7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심사·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

(단위 : 사)

공개 시기	'25.5월	'24.9월	'24.5월	'23.11월	'22.6월	'21.12월	'21.6월	'20.8월	'19.12월	합계
조치 시기	'24.하	'24.상	'23년	'22년	'21년	'20년	'18년~ '19년	'15년~ '17년	'11년~ '14년	'11년~ '24.하
지 적 유 형	① 매출매출원가	4	2	6	3	4	5	12	4	44
	② 투자주식	1	4	-	4	3	5	6	4	31
	③ 재고·유형자산	-	2	2	3	3	1	5	7	23
	④ 기타자산·부채*	7	4	4	5	2	2	5	7	44
	⑤ 주식 미기재 등	2	1	2	3	3	11	2	9	40
지적사례 수(합계)		14	13	14	18	15	27	15	37	182

* (예시) 파생상품부채 미계상, 리스기간 산정 오류, 금융부채 미인식,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등

-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주로 지난 3년간 역량을 집중한 **회계 부정 유인**이 **높은** 기업에 대한 회계위반 **적발** 및 **조치**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.
- 아울러 **회계 오류**를 **예방**하고, 기업의 적시성 있는 재무제표 정정을 유도하는 **테마심사** 등의 심사 사례도 포함하였습니다.

< 중선위·금융위 주요 조치사례 >

사례	구분	내용
사례1	IPO 예정기업	IPO 목적으로 재무성과를 인위적 으로 조작한 기업에 대하여 검찰고발·과징금 등 중조치 를 부과
사례2	현장조사	회사의 허위매출 관련 미판매 재고를 현장 에서 신속히 조사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 할 자료 를 확보
사례3	한계기업	상장폐지 를 회피 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허위계상한 한계기업 에 대하여 거래소에서 거래정지 할 수 있도록 함
사례4	과징금	중대한 회계 위반에 역대 최대규모 의 과징금 (161억원)을 부과
사례5	테마심사	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·발표하여 오류를 예방 하고, 오류 항목은 신속 점검으로 회계정정을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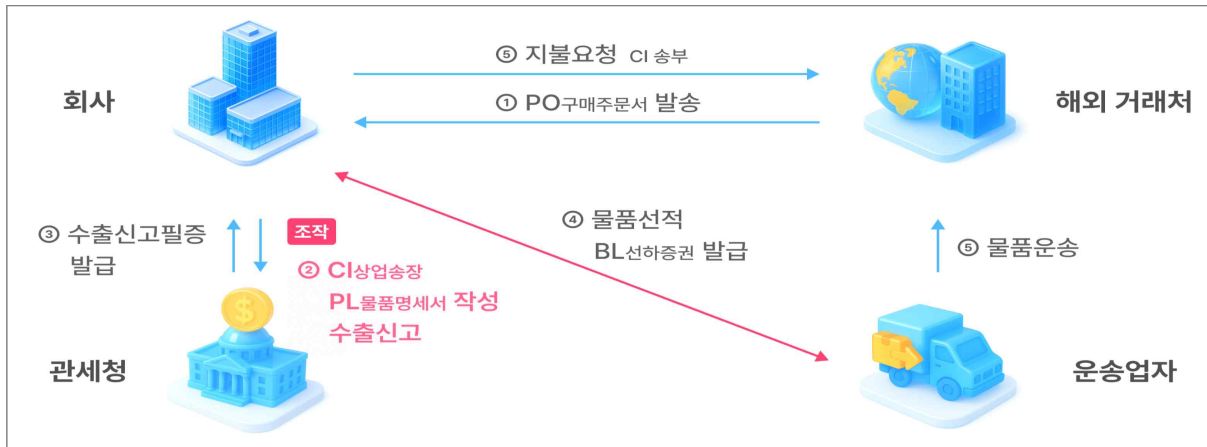
III

주요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 *증권위·금융위 주요 조치 사례

사례1 IPO 예정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중조치

◆ IPO를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기업에 대하여 회사·대표이사를 **검찰고발**하고, **과징금을 부과**하는 등 **중조치**하였습니다.(고의위반)

- **(사실관계)** 화학제품 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하였음
 - 이에 따라 회사는 상업송장(CI) 및 물품명세서(PL)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**가공매출**을 인식하거나,
 -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하였음
 - 또한, 외부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,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**감사**를 **방해**한 행위도 있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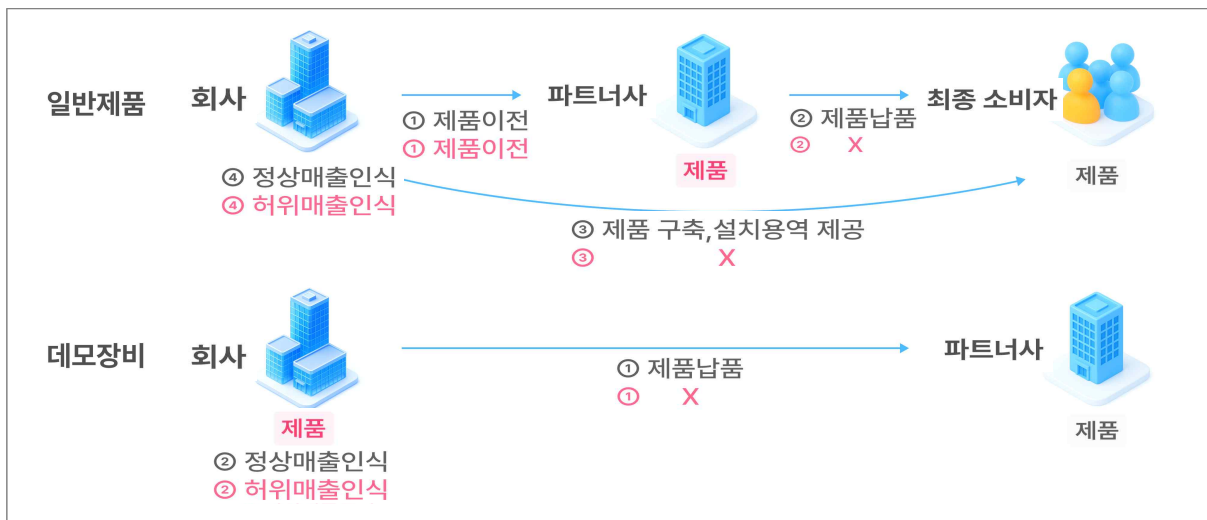


- **(지적내용)**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 **가공**의 외관을 형성하여 **매출**을 계상하였고,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**허위자료**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
- **(유의사항)** 감사인은 IPO 과정에서 제시되는 **실적** 등의 분식 가능성에 유의하고, 회사가 **외부조회서 발송**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위험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, **감사 의견**에도 반영 고려
 - 한편, 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“위법동기 **고의** 판단”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, 관련자들에 대한 **검찰 고발** 조치도 가능한 점에 유의

사례2 | 현장조사를 통한 신속한 감리실시

◆ **IPO 공모가**를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분식회계에 대하여 **현장 조사**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증거를 **신속**하게 확인하였습니다.(고의위반)

- **(사실관계)**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B사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등은 **IPO 공모가**를 높이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음
 - 회사는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**납품하지 않았거나**(일반제품*), 상품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**매출(데모장비**)**로 인식하였음
 - * 일반제품 매출: 파트너사에게 제품을 미리 이전하고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납품·구축
 - ** 데모장비 매출: 파트너사가 제품의 이해 및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로부터 염가에 구입
 - 또한,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시, 납품 없이 매출로 인식 하였던 **재고자산**을 별도 장소에 **은닉**하기도 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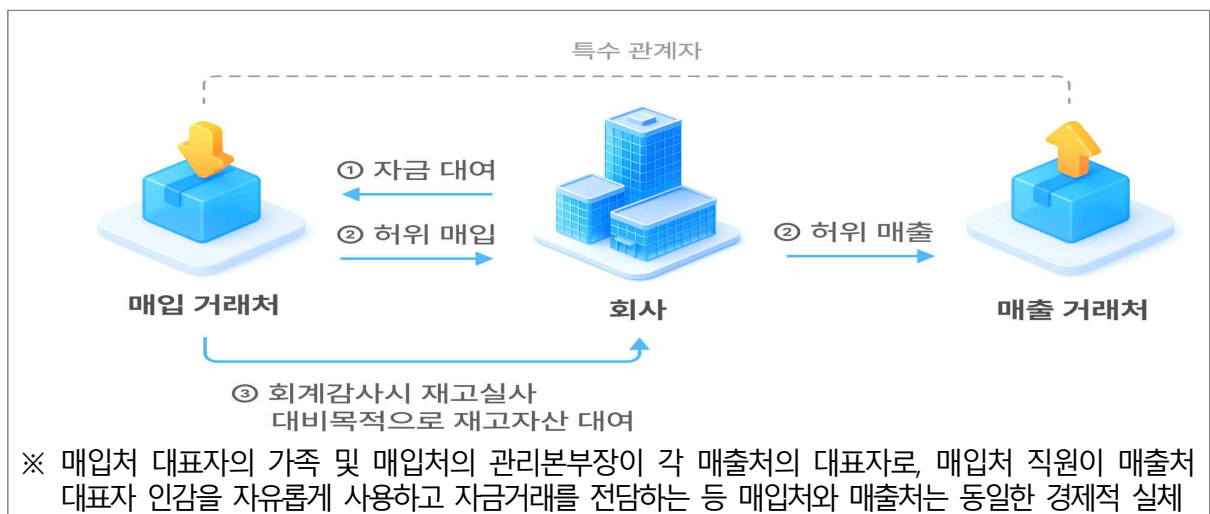


- **(지적내용)** 금감원은 **현장조사**로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적발하였고, **허위매출**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등을 지적
- **(유의사항)** 공모가 산정을 앞둔 기업의 경우 **실적 부풀리기 유인**이 존재하므로, 투자자는 실적 추이 등을 확인할 필요
 - 감사인은 IPO 등으로 매출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경우 거래증빙 등 매출 관련 감사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 - 한편, 회사가 허위증빙 등을 마련해 놓더라도 금감원이 **현장조사**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됨

사례3 | 한계기업의 조기퇴출 유도

◆ **상장폐지**를 **회피**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 통보를 통해 **상장폐지 절차**가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.(고의위반)

- **(사실관계)**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, **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**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음
 - 매출처와 매입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고, 상품 이동도 없어 회계기준 상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
 - 또한, 회사는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일에 **재고자산을 대여**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



- **(지적내용)**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시켜 거래의 실질은 자금 **대여거래**에 해당함에도, **세금계산서 발행**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**허위매출** 등을 인식하였고,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
- **(유의사항)** 투자자는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기업에 **관리종목 지정** 등의 **회피**를 위한 회계분식의 **유인**이 있음을 염두하고,
 -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되어 거래소의 **거래정지**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
 - 감사인은 한계기업이 **새로운 상품 매출거래**를 인식하는 경우,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**확보**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

사례4 |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

◆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하여 **역대 최대 과징금**을 부과(161억원)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
- **(사실관계)** 설비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D사는 건설공사 관련하여 공사에정원가 및 공사손실을 과소계상하였고,
 - 해외 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음
 - 감사인은 해당 **종속기업**을 **유의적이지 않은 부문**으로 판단하여, 계정별 잔액의 증감만 계산하고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하였음
- **(지적내용)**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계상*하고,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
 - * 공사수익은 총공사수익에 진행률(=투입공사원가÷총공사원가)을 곱하여 산정되므로, 총공사원가를 과소산정하는 경우 진행률이 높아져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됨
 - 감사인은 해외 종속회사의 공사수익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→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회사 161억원(역대 최대), 감사인 14억원 부과
- **(유의사항)** 장기 공사수익의 경우 합리적 원가 추정이 전제되어야 하나, 이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있으므로 **예정원가** 산정 시 **신뢰성** 있는 **근거**자료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함
 - 감사인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보증 여부 등 회사와의 관계 및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,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**내부통제**를 고려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함
 - 회사에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**금전적 제재**가 부과될 수 있음

< 중대한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(사례) >		
구분	지적사항	과징금
회사	·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	√ 회사: 161억원 √ 전 대표이사: 10억원
	·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	
	· 자료제출 거부 등	
감사인	· 매출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	√ OO회계법인: 14억원
	· 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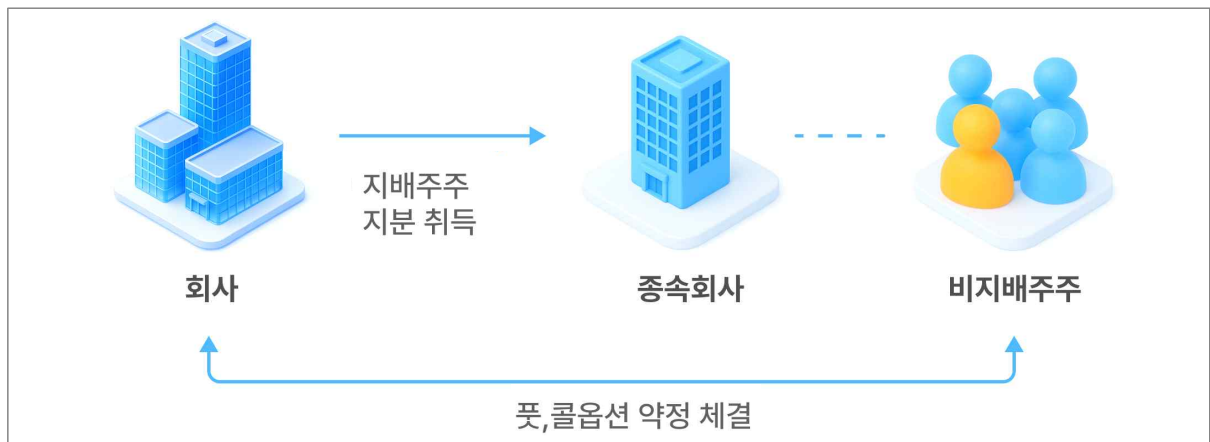
사례5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운영

◆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, 경미한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 이행시 금감원장 경조치로 심사 종결하였습니다.

※ 동 사례는 「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·업종 사전예고(‘22.6.27. 보도)」에 따라 '사업결합' 관련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

- (사실관계) 응용소프트웨어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E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F사(이하 '종속회사') 지분을 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와 풋·콜 약정*을 체결하였으나, 관련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음

* 콜옵션: 요건 충족시 회사가 비지배주주에게 종속회사 주식을 매도 요구 가능
 풋옵션: 요건 충족시 비지배주주가 회사에 종속회사 주식을 매수 요구 가능



- (지적내용) 재무제표에 풋·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평가손실 과소계상
- (유의사항)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 관련 옵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내용, 성격, 관련 의무 등을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함
- 특히, 옵션 행사 유예 등의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할 필요
 - 회사 및 감사인은 향후 유사 회계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

→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수정공시를 권고하여 회사는 이행하였고, 과실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으로 판단되어 경조치(주의·경고) 부과

IV 감리절차 개선

◆ 회계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하되, 절차는 「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(’22.5.31., 금융당국)」에 따라 한층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.

1 감리기간 단축

◆ 감리 조사기한^{1년}을 명문화하여 운영하였고, 그 결과 모든 감리건의 내부조사를 1년 이내에 완료하여 수검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.

□ (규정개정)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을 개정(’22.9.29.)하여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*으로 1년으로 제한

*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

○ (이행결과) 규정화된 감리기간 통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감리 조사기간 1년 초과건이 발생하지 않는 등 감리 장기화 개선

2 조치사전통지 내용 충실화

◆ 감리결과 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통지함으로써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조치 수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
□ (절차개선) 감리 결과 예상 조치 통지(조치사전통지서) 시, 조치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감리집행기관의 판단, 적용된 양형 기준(가중감경 사유 포함) 등을 알 수 있도록 통지서 개선

○ (이행결과) 개선된 양식에 따라 위반 근거, 지적금액 및 과징금 산정내역, 조치수준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, 조치대상자는 감리위·중선위에서 해당 통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

3 피조치자 문답서 열람시기 개선 및 복사 허용 등

◆ 피조치자가 종전보다 앞당겨진 시점에 문답서를 열람하고, 복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.

□ (규정개정) 금융위의 외감규정 등 개정(’22.9.29.)에 따라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기고, 복사를 허용

- **(이행결과)** 문답서 열람·복사 절차를 마련하여 피조치자가 조기에 문답서를 확인하고 **복사**할 수 있도록 하여 **방어권 행사**를 적극 지원
- **(기타 권익보호 등)** 문답서 및 감리절차 안내문 개정, 대리인 조사 과정 기록 허용 및 자료요청의 서면화 등 절차개선으로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고

V **향후계획**

- 금융감독원은 **유관기관**(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)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**심사·감리 주요 지적사례**를 **배포함**으로써 **유사사례 재발방지** 및 **투자자 의사결정**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.
-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**심사·감리 주요 지적사례**를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**Database**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.

※ (👉 **붙임1**)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·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

※ (👉 **붙임2**) 회계심사·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

(별첨)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·감리 주요 지적사례

① 매출 · 매출원가(4건)

1. FSS/2505-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
2. FSS/2505-02 매출 허위계상
3. FSS/2505-03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
4. FSS/2505-04 매출 기간귀속 오류

② 종속 · 관계기업투자주식(1건)

1. FSS/2505-05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

③ 기타 자산·부채(7건)

1. FSS/2505-06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
2. FSS/2505-07 파생상품부채 미계상
3. FSS/2505-08 리스기간 산정 오류
4. FSS/2505-09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
5. FSS/2505-10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
6. FSS/2505-11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
7. FSS/2505-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

④ 주식미기재 등(2건)

1. FSS/2505-13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
2. FSS/2505-1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식 미기재

붙임2

회계심사·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

※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fss.or.kr)－업무자료－회계－회계감리－심사·감리지적사례

금융감독원

민원·신고

참여·소통

업무자료

금융통계

금융소비자보호

보도·알림

금감원소개

회계

회계감리

- 회계감리업무절차
- 회계감리결과제재 등
- 심사·감리지적사례
- 회계법인품질관리매뉴얼
- 회계법인사업보고서
-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

200	FSS/2409-08	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	재고자산 및 유형자산	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, 제1016호	2024
199	FSS/2409-07	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...	재고자산	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	2024
198	FSS/2409-06	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...	관계기업투자주식	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	2024
197	FSS/2409-05	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	종속기업투자주식	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, 1028호	2024
196	FSS/2409-04	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...	종속기업투자주식	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	2024

1 2 3 4 5 6 7 8 9 10 > >>

심사·감리지적사례

연도 - 월 - 일 ~ 연도 - 월 - 일

전체

전체

쟁점분야

관련기준서

결정년도

쟁점 분야

관련 기준서

결정년도

첨부파일

조회수

번호	공개번호	제목	쟁점 분야	관련 기준서	결정년도	첨부파일	조회수
205	FSS/2409-13	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...	특수관계자 공시 등	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	2024	8571	
204	FSS/2409-12	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	공정가치	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	2024	7845	
203	FSS/2409-11	무형자산(개발비) 과대계상	무형자산(개발비)	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	2024	7601	

심사·감리지적사례

연도 - 월 - 일 ~ 연도 - 월 - 일

전체

매출원가

전체

매출원가

결정년도

첨부파일

조회수

번호	공개번호	제목	쟁점 분야	관련 기준서	결정년도	첨부파일	조회수
16	FSS/2409-02	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...	매출 및 매출원가	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	2024	358	
15	FSS/2409-01	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	매출 및 매출원가	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	2024	488	
14	FSS/2405-04	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	매출 및 매출원가	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	2023	555	

- 12 -